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훈자녀의 사립대학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8, 220193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 요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 검토의견: 보훈자녀의 사립대학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3
※ 참고자료	10

I. 개 요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7. 18.

(3) 회부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7. 18.
- (3) 회부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II. 검토의견: 보훈자녀의 사립대학 수업료 전액 국가 보조

□ 2건의 개정안¹⁾은 사립인 대학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면제한 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3항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 ② (생 략) ③ 사립인 대학생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u>절반</u> 을 보조한다. ④ · ⑤ (생 략)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전부</u> 를-----. ④ · ⑤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 ② (생 략)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0호).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u>절반</u> 을 보조한다.	③ ----- ----- ----- ----- ----- ----- <u>전부를</u>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와 미성년 제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인 대학등²⁾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와 미성년 제매(弟妹)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국가가 면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³⁾

○ 이에 대하여, 국가가 보훈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함.

*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가유공자법」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3) 「국가유공자법」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로 인하여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음.

[표 1] 보훈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등 면제 제도⁴⁾ 현황

(23년 12월 기준, 단위: 명, 백만원)

법률	적용 대상	대상 인원	보조금액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598	1,218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의 자녀, 미성년 제대	8,640	19,872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대	265	848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대 수당지급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1,278	1,793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77	230
5·18민주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미성년 제대	170	455
계		11,028	24,416

* 상이7급 유공자 등 일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함.

** 음영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을 의미함.⁵⁾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사립대학 등이 보훈자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임⁶⁾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4) 교육기관이 대상자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사립인 대학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면제금액의 50%를 보조함.

5)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사립인 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의 국가 보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를 준용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할 경우 독립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의 수업료 등 면제 금액에 관한 국가 보조 금액도 변화하게 됨.

6) 「국가유공자법」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함에 있어 사립대학 등의 부담 여부는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수업료 면제 제도의 취지 및 보훈 장학 제도로 인한 사립대학의 부담 가중 정도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보훈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제도를 국가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수업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수업료 등을 면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⁷⁾ 이는 동 제도가 교육기관의 공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게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⁸⁾

○ 둘째, 사립대학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내 장학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⁹⁾ 보훈 관계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이 부담하는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 금액은 위 교내

7) 「국가유공자법」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8)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마565 결정. 이에 따르면, 국가가 사립대학 등이 면제한 수업료 등의 50%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대학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과 동시에 사립대학 등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9)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 훈령)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장학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면제 금액(보훈장학)이 교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보훈 자녀의 수업료 면제로 인한 부담 가중 정도를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표 2] 2023년도 사립대학 장학금 운영 현황¹¹⁾

(단위: 억원, %)

구 분	사립대	전문사립대	계	보훈장학 (교내장학금 대비)
등록금	73,451	21,942	95,393	-
교내 장학 (등록금 대비)	13,666 (18.6)	3,324 (15.1)	16,990 (17.8)	253 (1.5%)
교외 장학 (국가장학 포함)	25,781	11,303	38,686	253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출처: 대학알리미)

□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국가 책임 강화 요구와 함께 제도의 취지, 개정안에 따른 사립대학의 부담 완화 정도 및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의무적으로 장학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등록금의 10% 금액(9,539.3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2.65%에 해당함.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로 그 자녀 대부분의 교육지원이 완료됨으로써 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음.

※ 2001년도 29,040명 → 2023년도 13,690*명(-52.8%) *보훈자녀 외 국가유공자 본인이 포함된 수치임

11) <대학 장학금 운영 제도>

구분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종류	우수장학, 근로장학, 교직원 장학, 보훈장학(50%)	기업체, 사회단체, 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보훈장학(50%))	국가장학(소득분위별), 국가근로장학 등
재원	등록금(10% 이상)	재단, 기업체 등	국가

* 보훈자녀 수업료 등에 대한 장학금은 교내장학(50%), 교외장학(국가보훈부 보조 50%)로 구성됨.

자료: 국가보훈부(출처: 교육부 2024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 등이 면제하는 수업료 등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218억 7,440만원(5년간 1,093억 7,200만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표 3] 현행 재정수요 및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대상 인원	10,310	10,106	9,923	9,760	9,615	-
현행법 재정소요 (50% 보조)	22,682	22,233	21,831	21,472	21,154	109,372
개정안 추가재정소요 (전액 지원)	22,682	22,233	21,831	21,472	21,154	109,372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각 개별 법률에서 사립대학 등의 수업료 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¹²⁾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만 개정될 경우, 유공자의 유형에 따라 수업료 면제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사립대학 등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게 수업료의 50%를 보조하더라도 교내 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사립대학 등의 재정부담은 낮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도 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두 법률은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특수임무유공자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은 이러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국립 대학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금액 전부를 교육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립·사립대학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제도

법률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교육기관(대학등) 수업료 면제 ○ 교육기관(중,고,대학 등) 수업료 면제 *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게 면제한 금액의 50% 국고보조 ○ 수업료 등 국비보전 *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납부자에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 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② 상이7급 상이유공자의 자녀	○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수업료 국비보전 *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게 수업료 국비보전 (지급한도액 고시)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자녀 ○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생활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 - 상이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 정원의 취학 ○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정원의 취학 (학생정원의 3%)
고엽제후유 의증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상이7급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전상·공상군경대우) ○ 수당지급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 생활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 - 장애등급 경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 학습보조비 지급 ○ (대상) ① 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② 대학등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연간지급액, 천원) - 중학교 124, - 고등학교(인문계) 144, - 고등학교(실업계) 186, - 대학교(본인) 236, - 특수학교(유·초등) 534, - 특수학교(중·고등) 718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생활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 ① 특수임무공로자 및 자녀 ② 상이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본인 사망 시 미성년 제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생활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 ①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② 장애등급 11등급 미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액

(단위 : 명, 백만원)

학교	학년	'25		'26		'27		'28		'2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문대	1학년	769	1,692	783	1,723	798	1,756	813	1,788	828	1,822
	2학년	640	1,408	648	1,426	657	1,445	665	1,464	674	1,483
	3학년	141	310	137	302	132	291	128	282	124	274
	4학년	72	158	67	148	62	137	58	128	54	119
대학교	1학년	814	1,791	754	1,659	699	1,537	648	1,425	600	1,320
	2학년	796	1,751	751	1,652	709	1,560	669	1,472	632	1,390
	3학년	1,016	2,235	960	2,112	909	1,999	859	1,891	813	1,788
	4학년	1,468	3,230	1,485	3,267	1,500	3,299	1,515	3,334	1,531	3,369
	5학년	31	68	35	77	39	86	44	96	49	107
	6학년	9	20	10	22	11	24	11	25	12	27
원격대학	1학년	285	627	262	576	241	529	221	486	203	446
	2학년	313	689	304	668	296	651	288	634	280	617
	3학년	711	1,564	672	1,478	635	1,398	601	1,322	568	1,250
	4학년	967	2,127	1,021	2,246	1,078	2,373	1,139	2,506	1,203	2,646
학점기관	소계	2,278	5,012	2,217	4,877	2,157	4,746	2,101	4,619	2,044	4,496
합계		10,310	22,682	10,106	22,233	9,923	21,831	9,760	21,472	9,615	21,154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지원(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제외)

** 인원 : 2023년 인원에 학교 학년별 최근 5년 평균증감율(국가△3.3%, 보훈보상8.4%) 적용

*** 금액 : 2023년 1인 평균 수업료(국가2.3백만원, 보훈보상3.2백만원) 적용하여 단가 동결

자료: 국가보훈부